

04	아동을 골병들게 하는 전문가	심희기
06	전관예우, 이대로 둘 것인가	하태훈
08	노조 손배소 · 가압류, 이렇게 본다	김제완
10	헌법상 권리로서의 '변호인 입회권'	조국
12	국민투표와 헌법	임지봉
13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박근용
14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집시법 개정안에 대한 비평

한상훈 _ 국민대 법대 조교수

1) 2003. 11. 19. 국회 행정자치위원회는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중개정법률안(이하 집시법개정안)을 위원회 대안으로 심사·의결하였다. 이는 기존에 제출되었던 여러 개정안을 통합하여 단일한 대안으로 통과시킨 것이다. 그런데 이 개정안에 대하여는 집회 및 시위의 자유를 근본적으로 침해, 제약하는 개악법이라는 비판과 우려의 목소리가 높고, 국가인권위원회도 반대의견을 분명히 하였다.

2) 먼저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장기간의 집회독점을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신고서는 옥외집회 또는 시위의 360시간(15일)전부터 48시간전에 제출하도록 함(안 제6조제1항). ②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1항단서 신설). ③ 학교 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의 집회·시위로 인한 피해를 방지

하기 위하여 신고서에 기재된 집회장소가 초·중등교육법 제2조에서 규정한 학교시설, 군사시설보호법 제2조 및 제18조의 규정에 의한 군사시설 주변으로서 그 시설 등에 심각한 피해가 발생할 우려가 있는 경우로서 그 거주자 또는 관리자가 시설 등의 보호를 요청하는 때에는 집회 또는 시위의 금지·제한을 통고할 수 있도록 함(안 제8조제3항, 안 제18조제1항제4호). ④ 행진으로 인한 심각한 교통소통장애 등을 방지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등 주요도로에서 질서유지인을 두고 행진한 경우에도 당해 도로와 주변도로의 교통소통에 장애를 발생시켜 심각한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이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제2항). ⑤ 소음으로 인한 시민들의 피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집회 또는 시위의 주최자가 확성기 등 기계·기구의 사용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소음기준을 초과하는 소음을 발생시켜 타인에게 피해를 주는 경우 적정수준의 소음유지 또는 확성기 등의 사용중지를 명하거나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함(안 제12조의3 및 제20조제5호 신설). ⑥ 집회·시위의 금지 또는 제한통고에 대한 자문 등의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각급 경찰관서에 시민단체 등에서 추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천하는 사람 등으로 구성된 집회·시위 자문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함(안 제18조의2 신설).

3) 집시법개정안에서 긍정적인 부분은, 위장집회신고를 방지하기 위한 조항과 과도한 소음규제부분이다. 종래 실제 집회를 개최할 의사가 없으면서도 건물주변의 집회나 시위를 방해하기 위한 목적으로 허위의 집회신고를 통하여 특정장소를 장기간 부당선점하는 사례들이 적지 않았다. 특히 최근에는 일부 경찰서에 서 위장신고를 유도했다는 보도도 있었던 바, 이는 위계로 인하여 집회시위의 자유를 실제로 침해하는 경우라고 할 것이다. 그러나 이번 개정안처럼 신고기간을 제한하는 것만으로 문제가 해결되기는 어려울 것이다. 오히려 신고기간을 제한함으로써 자유로운 집회의 계획을 막을 수가 있다. 위장신고와 장기독점의 폐해를 방지하기 위하여 신고기간의 제한 이외에 다른 합리적이고 공정한 방법을 강구하는 것이 타당하다.

다음으로, 집회에서 과도한 소음을 유발하는 것을 규제할 필요성도 인정하지 않을 수 없다. 심지어 과천정부종합청사 주변의



▲ 인권·시민사회단체 회원과 시민들이 집시법 개정을 반대하는 집회를 열고 있다.

주민들은 청사 앞에서 연일 개최되는 고성능확성기소리에 지쳐 집회를 자제를 호소하는 시위를 할 정도라고 한다. 집회및시위의 자유는 보장되어야 하나, 무제한적인 것은 아니고 다른 법익과의 균형성을 고려하지 않을 수 없으므로, 과도한 소음은 자제되어야 한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집회소음규제로 대규모 집회가 통제, 제약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하고 있는바 이는 경청해야 한다. 대규모 집회 자체를 원천적으로 금지하는 방향으로 소음규제가 남용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소음기준을 하위법령에 맡겨둘 것이 아니라 법률로서 국민적 합의를 찾아야 할 것이다. 또한 소음기준을 정함에 있어 확성기의 소음 자체를 측정하여 정하는 것이 아니라 집회장소에서 가장 근접한 주택가나 사무실에서 측정된 소음을 기준으로 하는 등의 방법을 검토해야 한다.

4) 일부 긍정적 부분에도 불구하고 이번 집시법개정안은 본질적으로 집회및시위를 제한하고 금지하려는 경찰청의 의견이 대부분 수용되어 개악안이라는 비판을 면하기 어렵다. 가장 문제가 되는 것은, 주요도로에서의 집회나 행진을 금지할 수 있도록 한 것이다. 현행집시법 제12조에 의하면, 질서유지인을 두고 질서유지선을 준수할 경우에는 주요도로의 시위나 행진도 금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집시법개정안은 이에서 더 나아가 교통불편을 줄 것이 예상되는 때에는 주요도로의 시위나 행진을 완전히 금지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안 제12조제2항). 현재 주요도로는 서울에만 세종로-태평로-한강로, 퇴계로, 남대문로, 대학로, 창경궁로, 돈화문로, 북악산로 등을 비롯하여 총15개이며, 부산 12개, 대구 9개, 인천 9개, 광주 8개, 대전 6개 등 19개 도시에 걸쳐 지정되어 있는 상태이며 앞으로 더 늘어날 가능성이 있다. “교통불편”을 이유로 이러한 도로에서의 시위 및 행진을 금지하게 되면 결국 집회, 시위를 통한 의사표현의 자유는 근본적으로 제약, 침해될 것이며, 나아가 “교통불편”여부는 경찰이 자의적으로 결정하므로 중요한 집회와 시위의 허가여부는 행정기관인 경찰의 포괄적 재량권에 달려있게 된다. 원활한 교통소통이라는 편익도 경시할 수 없으나, 이로 인하여 사람의 의사표현의 자유와 민주주의적 의사형성의 가치가 무시될 수는 없다. 넓은 도로에서는 집회나 행진을 하여도 인도나 1-2차선을 이용하여 행진하게 하는 등 행진의 범위가 질서유지선을 통하여 교통소통의 목적은 충분히 달성할 수 있어, 이러한 개정안은 과잉금지원칙과 법익균형성을 일탈한 위헌의 소지도 있다고 보여진다.

신고된 집회가 집단적인 폭행·협박·손괴·방화 등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에 직접적인 위험을 초래한 경우에는 남은 기간의 당해 집회·시위와 동일 목적의 다른 집회·시위에 대하여 금지통고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안 제8조제1항 단서 신설)도 문제가 있다. 대규모집회의 경우 주최측과 무관한 폭력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으므로 이를 무조건 주최측의 책임으로 전가하여 남은 집회를 금지하는 것은 부적절하다. 동일목적의 다른 시위조차 일괄금지하는 것은 과잉금지에 해당하며, 일종의 연좌제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초중고등학교시설이나 군사시설 주변에서 집회나 시위를 금지할 수 있도록 하는 안도 부적절하다. 평화적인 소규모집회나 시위는 학업이나 군사시설에 위해를 주지 않을 수 있으므로 이러한 집회나 시위에 대하여도 금지할 수 있는 재량권을 경찰에 부여한 것은 부당한 포괄적 위임이라고 하지 않을 수 없다. “주변”의 범위도 명확하지 않다.

5) 최근 여러 시위가 과격화 폭력화하고, 화염병이 등장하는 등 현재 우리나라의 시위문화에 문제가 없는 것은 아니다. 그러나 이러한 사회적 갈등의 이면에는 정부의 정책잘못과 일방적 집행도 근원적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일부 과격시위를 시위자나 주민의 탓으로 전적으로 돌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보다 선진적이고 성숙한 시위문화는 시위와 집회에 대한 일방적 통제와 규제, 금지만으로 결코 이룰 수 없다. 민주적 의사형성과 인격적 자기표현의 자유라는 집회와 시위의 근원적 가치를 감안하여야 한다. 일시적 현상에 현혹되어 본질적 기본권을 폐기하는 우를 범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점에서 2003. 10. 30. 헌법재판소가 집회및시위에관한법률 제11조 제1호 중 “국내주재 외국의 외교기관” 부분은 헌법에 위반된다고 결정하면서(2000헌바67, 2000헌바83 (병합) 결정), 실시한 내용은 가슴에 와 닿는다. “우리 사회의 잘못된 시위문화가 평화적으로 집회의 자유를 행사하고자 하는 국민의 기본권행사 여부를 결정할 수는 없는 것이다. 우리 사회에서 금지되고 축출되어야 하는 것은 바로 폭력적·불법적 시위이지, 개인의 정당한 기본권행사가 아닌 것이다. 그러므로 우리 사회의 폭력적 시위문화로 인하여 자신의 기본권을 평화적인 방법으로 공공의 안녕질서와 조화를 이루는 범위 내에서 행사하려고 하는 국민의 기본권이 부당하게 침해되어서는 안 된다.”



아동을 골병들게 하는 전문가의 비전문성

심희기 _ 연세대 법학부 교수

1. 국회에서 가결된 성폭력법개정안

2003년 11월 21일 전재희 의원이 발의한 성폭력법개정안(이하 '개정안'으로 약칭함)이 일부 수정(이하 '수정안'으로 약칭함)되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었다. 이 법(이하 '개정법'으로 약칭함)은 공포 후 3개월이 되는 시점부터 발효되므로 대략 2004년 3, 4월쯤 정식으로 시행될 것이다. 이하에서 개정법의 내용을 검토해 보기로 하자. 가장 관심의 대상이 되는 부분은 '성추행·성폭행·성학대를 당한 13세 미만의 아동'(이하 '피해아동'으로 약칭함)이 피해사실에 대하여 최소한 몇 번 진술하여야 하는가 하는 점이다.

현재의 한국의 형사절차는 수사절차와 공판절차로 나누어져 있으므로 범죄피해자는 최소한 수사절차에서 수사기관을 상대로 1회(피해자·참고인 진술), 공판절차에서 판사를 상대로 1회(증언), 도합 2회 진술이 필요하다. 그런데 피해아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일은 매우 고통스러운 일이고 피해아동의 정신 건강에도 매우 해롭다. 그러므로 피해아동의 부모와 치료를 담당하는 의료진은 피해아동이 피해사실에 관하여 진술하는 일을 단 1회에 그치도록 하고 싶다(이하 이 입장을 '회진술론'으로 약

칭함). '회진술론'의 입장에서 개정법을 분석하여 보자. 개정법 하에서 '회진술론'을 관철시키는 방법이 있는가, 있다면 어떤 조건 하에서 가능한가?

2. 개정법 하에서 '회진술론'을 관철시키는 방법

개정법 하에서 '회진술론'을 관철시키는 방법에는 두 가지가 있다. 하나는 수사과정(참고인진술)의 녹화이고 또 하나는 증거보전이다.

(1) 수사과정의 녹화

수사기관에서 피해아동의 진술을 청취할 때 청취과정을 비디오로 녹화하고 검사가 이 비디오테이프를 법정에 증거로 제출하는 방법(개정법 제21조의2)이다. 그런데 이 비디오테이프는 법정에서 전문증거(형사소송법 제310조의2)로 간주되어 예외조건을 충족시켜야 한다. 개정안은 예외조건을 "작성자 또는 진술자"가 공판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증명"하는 것으로 설정하였는데 국회전문위원은 이 개정안에 대하여 "원진술자에 대한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부당하게 침해하는 결과를 초래하게 되는 문제"가

있으므로 이 개정안이 “삭제”되어야 한다는 검토의견을 내 놓았다. 개정안은 피해아동이 법정에서 진술하는 것을 두려워하면 영상물을 녹화한 수사기관이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을 인정할 수 있도록 하여 ‘회진술론’을 관찰시킬 수 있도록 제안되었다. 그런데 검토의견은 피고인의 반대신문권을 내세워 ‘최소 2회진술론’을 주장한 셈이다. 수정안(즉, 개정법)은 예외조건을 “피해자 또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다. 수정안은 ‘회진술론’과 ‘최소 2회진술론’을 절충한 것처럼 보인다. 수정안에 따르면 수사기관은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할 수 있는 주체가 아니므로 개정법 하에서 ‘회진술론’을 관찰시키려면 비디오테이프를 녹화할 때 피해아동과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동석’한 후 이 동석자가 법정에서 비디오테이프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면 된다.

(2) 증거보전

현행 성폭력법 제22조의4 제1항은 ‘피해자가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증언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때’에 ‘피해자와 그 법정대리인은 당해 성폭력범죄를 수사하는 검사에게 형사소송법 제184조(증거보전의 청구와 그 절차)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증거보전의 청구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증거보전이란 미리 증거를 보전하지 아니하면 증거가 일실(逸失)될 우려가 있는 경우(예를 들어 피의자·피고인에게 유리한 증언을 하여 줄 증인이 곧 해외로 이주할 우려가 있는 경우)를 대비한 제도이고 증거보전의 입법의도는 피의자·피고인 측이 자신에게 유리한 증거를 법원의 힘을 빌려 미리 강제로 확보할 수 있게 하는 수단을 제공하는데 있다. 수정안은 현행 성폭력법 제22조의4 제1항의 후단에 “이 경우 피해자가 13세 미만의 미성년자이거나 대통령령이 정하는 장애인인 때에는 공판기일에 출석하여 진술하는 것이 현저히 곤란한 사정이 있는 것”으로 간주하는 조항을 추가하여 검사의 지방법원 판사에 대한 증거보전 신청을 좀 더 강하게 압박하고 한다. 검사가 개정법의 증거보전을 활용할 경우 예상되는 문제를 추정하여 보자.

과거에 검사는 수사상의 증인신문(형사소송법 제221조의2)은 간혹 행사하여 왔으나 형사소송법 제184조의 증거보전은 거의 행사한 적이 없었다. 그 이유는 제184조의 증거보전을 행하면 피의자·피고인의 참여권이 보장되는데 검찰측 증인은 피의자·피고인이 참여하면 증언을 회피하려는 태도를 보였고, 또한 제184

조의 증거보전을 행하면 피의자·피고인에게도 그 자료의 열람·등사권이 보장되기 때문이었으며 또한 제184조의 증거보전 구상은 피의자·피고인의 공판전 방어권 보장에 중점이 있었기 때문이다.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보호를 목적으로 피의자·피고인의 참여(반대신문)배제를 조건으로 증거보전을 요구하는 사례가 있을 수 있으나 피의자·피고인의 참여를 배제할 명목은 없다. 물론 증거보전의 일환으로 행하여지는 증인신문을 주재하는 판사는 형사소송법 제297조(증인신문시 퇴정하게 하고 입정후 진술요지 고지)를 적절히 활용할 수는 있다. 그러나 판사는 증거보전의 중요성에 비추어 가능한 한 피해아동이 피의자·피고인의 앞에서 당당하게 반대신문에 응하도록 유도하고 싶을 것이다.

(3) ‘회진술론’의 선택

‘회진술론’의 입장에서는 수사과정의 녹화방식과 증거보전의 어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는데 양자 모두 일장일단이 있다. 수사과정의 녹화방식은 피고인측의 반대신문을 회피할 수 있는 이점이 있지만 판사에게 주는 신빙성제고의 측면에서는 증거보전이 유익하다.

3. 개정법의 한계: 절반의 승리

개정법은 장차 발생할 아동피해사건에 대하여는 그런대로 커다란 위력을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수사과정의 녹화가 행하여지지 아니한 사건, 증거보전이 행하여지지 아니한 많은 사건들이 있다. 회진(가명)이 사건에서 회진이 엄마(개정법의 ‘신뢰관계에 있는 자’에 해당한다)는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회진의 진술비디오녹화 때 회진이 옆에 동석하지 아니하였다. 피해아동 옆에 엄마가 동석하면 비디오테이프에 녹화된 아동진술의 신빙성 판단에 지장을 줄까 봐 동석하지 아니하였는데 이제는 그것이 회진이 엄마에게 천추의 한으로 남게 될 것이다. 수정안(즉, 개정법)은 예외조건을 “피해자 또는 조사 과정에 동석하였던 신뢰관계에 있는 자”가 법정에서 “성립의 진정함”을 “인정”하는 것으로 수정하였는데 굳이 피해아동에게 법정에 나와 비디오테이프의 성립의 진정을 인정하게 하는 법제는 너무나 몰인정하고 야만적이다. 성인도 ‘성립의 진정’의 의미가 무엇인지 이해할 수 없는데 아동에게 그것을 강요하여 무엇을 달성하려는 것인지 알 수 없다. ‘설익은 전문가’의 비전문성(아동에 대한 무지) 때문에 한국의 아동은 골병이 들고 있다.



전관예우 이대로 둘 것인가

하태훈 _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아무리 자본주의 사회에서 돈의 위력과 그 유혹이 크지만 명예와 자존심마저 내팽개칠 수 있는가. 계속된 경기불황과 사법연수원 천명시대의 도래로 사건수임경쟁에서 살아남기가 난망이라고 하더라도 전직을 과시하고 전관예우를 암시하면서 사건수임을 유혹하는 변호사나 그 사무장, 사무장에게 고용된 사법연수원 수료 신참 변호사, 법조브로커에게 명의를 빌려 주거나 사건알선 브로커를 고용한 변호사, 수임료를 편취하거나 판·검사 교제비 명목으로 금품을 갈취한 변호사, 심지어는 재소자에게 휴대전화나 담배를 제공하고 범죄수익을 관리하는 등 변론은 뒷전이고 감옥수발로 돈을 챙긴 집사형 변호사도 있었다니 기가 찰 노릇이다. 전직 검찰총장이나 고검장, 대법원장이나 대법관이 퇴임 후 줄줄이 변호사로 개업하거나 대형 로펌의 변호사로 취직하는 것을 보면 명예보다는 돈이 더 중하다고 여기는 것은 아닌가하는 의구심을 갖게 한다. 대통령을 질책하는 퇴임사를 남겨 유명해진 전직 대법관이 퇴임식에서 변호사개업을 부도덕한 일로 여기는 것은 잘못이라면서 곧바로 법무법인의 대표로 취직한 일도 있었다.

더 이상 변호사라고 부를 수 없는 일탈(逸脫) 변호사의 출현으로 변호사상을 다시 그려야 할 판이다. 변호사자격증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돈을 거둬들이는 허가증으로 전락한 듯하다. 변호사는 인권보호의 파수꾼이며 정의실현을 담당하는 법조삼륜(法曹三輪)의 한 축임을 강조한 강의실에서의 외침이 헛수고였음에 허탈할 뿐이다. 법과 양심에 따라 사회적 약자를 보호해야 할 책무를 지닌 변호사들의 윤리의식과 양심의 부재가 잘못된 법학 교육의 탓이 아닐까하는 자책감도 든다.

사법개혁논의의 도화선이었던 의정부와 대전법조비리사건 이후에 법조비리가 다시 고개를 쳐든 것인지, 아니면 대검찰청이 특별단속기간을 정해 집중 단속한 결과인지는 알 수 없지만 어쨌든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이 벌어지고 있다. 문제는 검찰이 대대적인 단속을 펴고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 실상을 들여다보면 허울뿐이라는 사실이다. 칼을 들어대는 소리만 요란함에 그만 실망하고 만다. 법조비리사건의 수사와 재판결과를 보면 법조비리가 끊이지 않는 이유를 금세 알아차릴 수 있다. 비리 변호사에 대한 법원·검찰·대한변협외 처벌과 징계가 물려터진 것이다.

비리 변호사에 대한 구속영장청구율이나 발부율도 상대적으로

로 낮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거나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부분이다. 적발된 변호사의 대부분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갓 개업한 변호사이며 판·검사출신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여전한 전관예우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 검찰이 비리를 적발하여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변호사 중 제명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가벼운 정직, 과태료 처분, 견책 등이라고 하니 변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무딘 징계가 법조비리를 부추기는 꼴임을 알 수 있다. 각종의 연(緣)과 법조선 후배의식, 그리고 잠재적 동업자의식 등이 버무려진 솜방망이처럼 별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법조비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법조삼륜의 구성원들은 정의의 여신이 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지, 왜 변호사 배지에 천칭이 그려져 있는지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사로운 인연과 정에 얽매이지 말고 저울 같은 평평함을 유지하면서 추상같은 칼로 정의를 실현하라는 의미의 상징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대량 변호사개업과 경쟁시대에는 변호사업계의 자체 정화가 필수적이다. 나쁜 변호사를 감싸주다가 좋은 변호사, 인권수호에 앞장서는 변호사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어 공멸하는 사태는 미리 미리 막아야 한다. 자신들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침묵의 공포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방하여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투명하고 엄정한 징계권행사로 돈과 명예는 결코 자존심과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함께 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은 법조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해 공정경쟁을 해치는 수임비리 등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학연과 지연, 동업자의식에 의한 성역 만들기가 사법정의를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임을 자각해야 한다.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나 법조인이 공정하다고 믿는 응답자가 50%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과 전관예우의 존재를 믿는 응답자가 70%가 넘는다는 사실은 아무리 그 여론조사에 허용치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수치이다. 사법부는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을 과시하면서 사건수임을 유혹하고 전관출신의 변호사 수입료와 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의 수입

료가 무려 5배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남의 얘기로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대형 로펌이 고위직 판검사출신의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대형 로펌 수임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퇴직 후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일부 변호사들의 불만을 그저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해결사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법과 원칙이 통하는 법치주의원칙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방영된 KBS의 '한국사회를 말한다 - 재판을 재판한다'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 돈 앞에 법은 있는가, 변호사 수임 행태에 관한 보고서'를 보면서 아무래도 법조인에게 가재는 게 편일 수도 있는 법학교수로서 '그래, 사무장의 짓 일거야. 변호사는 그럴 리 없어. 방산의 일각이겠지.' 라면서 언론이 과장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재판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어찌하겠는가. 법조인 스스로만 아니고 부정하면서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적 성찰이 절실하다.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출신법조인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만큼의 연금을 탈 수 있다면 퇴임 후에는 명예를 지키면서 그들이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무료법률상담 등의 사회봉사로 사회에 돌려주고 후손에게는 돈이 아니라 명예를 물려줄 수 있는 날은 정녕 오지 않을 것인가.

사법감시센터 활동소개 : 논평·성명·의견서 9~11월

(편집자주. 각종 자료의 전문은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사법개혁' 매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3/9/4 [보도자료]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외견서 발표

-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2003/9/4 [보도자료] '사법개혁, 성공의 조건' 토론회 개최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2003/9/19 [보도자료]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터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

2003/10/29 [논평] 사법개혁 세번째 시도, '사개혁'이 성공하려면

- 실질적 개혁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회의공개 등 국민참여 보장해야

2003/10/31 [논평] 국민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헌법정신 되살린 결정

- 금지구역 300미터로 확장하려는 집시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2003/11/3 [보도자료]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 이익충돌의 유형분석과 그로 인한 수임제한 가능성 제기

2003/11/28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도 집시법 개정안 "반대"

- 국회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로 낮고 구속적부심으로 석방되거나 보석, 집행유예로 풀려나는 경우도 허다하다고 한다. 다른 범죄자와의 형평성이 문제되는 부분이다. 적발된 변호사의 대부분이 연수원을 수료하고 갓 개업한 변호사이며 판·검사출신은 거의 없다고 한다. 이는 검찰수사의 공정성이 의심을 받고 여전한 전관예우의 실체를 짐작할 수 있는 사실이다.

최근에 검찰이 비리를 적발하여 대한변협에 징계를 신청한 변호사 중 제명은 단 한 명도 없었으며 대부분 가벼운 정직, 과태료 처분, 견책 등이라고 하니 변협의 제 식구 감싸기식 무던 징계가 법조비리를 부추기는 꼴임을 알 수 있다. 각종의 연(緣)과 법조선 후배의식, 그리고 잠재적 동업자의식 등이 버무려진 솜방망이처럼 별이 검찰과 법원에 대한 신뢰를 무너뜨린다.

법조비리의 악순환의 고리를 끊으려면 법조삼륜의 구성원들은 정의의 여신이 왜 안대로 눈을 가리고 한 손에는 천칭을 들고 다른 한 손에는 칼을 쥐고 있는지, 왜 변호사 배지에 천칭이 그려져 있는지를 바로 보아야 할 것이다. 눈에 보이는 사사로운 인연과 정에 얽매이지 말고 저울 같은 평평함을 유지하면서 추상같은 칼로 정의를 실현하라는 의미의 상징임을 되새겨야 할 것이다. 대량 변호사개업과 경쟁시대에는 변호사업계의 자체 정화가 필수적이다. 나쁜 변호사를 감싸주다가 좋은 변호사, 인권수호에 앞장서는 변호사까지 불신의 대상이 되어 공멸하는 사태는 미리 미리 막아야 한다. 자신들만으로 구성된 징계위원회는 침묵의 공모로 인해 제대로 기능하지 못하기 때문에 대한변협은 징계위원회의 위원구성을 개방하여 외부인사를 참여시켜야 한다. 투명하고 엄정한 징계권행사로 돈과 명예는 결코 자존심과 양심을 버리면서까지 함께 질 수 있는 것이 아님을 보여주어야 한다.

검찰은 법조비리 전담 수사기구를 설치해 공정정쟁을 해치는 수임비리 등을 항상 감시해야 한다. 법원과 검찰은 학연과 지연, 동업자의식에 의한 성역 만들기가 사법정의에 대한 국민적 신뢰를 저해하는 원인임을 자각해야 한다. 최근 한 방송사의 여론조사에 의하면 재판이나 법조인이 공정하다고 믿는 응답자가 50%에도 훨씬 못 미친다는 사실과 전관예우의 존재를 믿는 응답자가 70%가 넘는다는 사실은 아무리 그 여론조사에 허용치 이상의 오류가 있다고 하더라도 너무나 수치이다. 사법부는 부장판사나 법원장 출신의 변호사가 전관을 과시하면서 사건수임을 유혹하고 전관출신의 변호사 수임료와 연수원을 갓 수료한 변호사의 수임

료가 무려 5배의 차이가 난다는 사실을 남의 얘기로 흘려 들어서는 안 된다. 대형 로펌이 고위직 판검사출신의 영입에 눈독을 들이고 대형 로펌 수임사건의 재판을 담당하는 법관은 퇴직 후의 취업을 염두에 두고 재판을 진행하는 것 같다는 일부 변호사들의 불만을 그저 근거 없는 흠집내기로 여겨서도 안 될 것이다.

법원은 사회적 갈등의 마지막 해결사인 사법부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무너지면 법과 원칙이 통하는 법치주의원칙이 흔들릴 수 있음을 인식해야 할 것이다. 최근에 방영된 KBS의 '한국사회를 말한다 - 재판을 재판한다' 와 SBS의 '그것이 알고 싶다 - 돈 앞에 법은 있는가, 변호사 수임 행태에 관한 보고서' 를 보면서 아무래도 법조인에게 가재는 게 편일 수도 있는 법학교수로서 '그래, 사무장의 짓 일거야. 변호사는 그럴 리 없어. 빙산의 일각이겠지.' 라면서 언론이 과장한 것이라고 믿고 싶었지만 재판과 법조인에 대한 국민적 불신은 어찌하겠는가. 법조인 스스로만 아니고 부정하면서 애써 모른 척 하는 것은 아닌지 반성적 성찰이 절실하다. 검찰총장이나 대법원장 및 대법관 출신법조인들이 품위를 유지하면서 살만큼의 연금을 탈 수 있다면 퇴임 후에는 명예를 지키면서 그들이 쌓은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무료법률상담 등의 사회봉사로 사회에 돌려주고 후손에게는 돈이 아니라 명예를 물려줄 수 있는 날은 정녕 오지 않을 것인가.

사법감시센터 활동소개 : 논평 · 성명 · 의견서 9~11월

(편집자주, 각종 자료의 전문은 참여연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

'사법개혁' 매뉴에서 보실 수 있습니다.)

2003/9/4 [보도자료] 김용담 대법관 후보 인사의견서 발표

- 전형적 법원내 엘리트코스를 밟아온 경력으로 볼 때 사법개혁에 대한 의지는 미지수
- 대법관으로서 적임자인지, 과연 최선의 선택인지 의문

2003/9/4 [보도자료] '사법개혁, 성공의 조건' 토론회 개최

-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 법률로 규정해야 실질화될 것

2003/9/19 [보도자료] 사법개혁추진기구 구성에 관한 의견서 발표

- 법원 내부가 아닌 독립된 기구로 위치하고 기구의 위상을 법률로 규정할 것
- 법조, 법학계 인사 1/3 넘지 않아야 할 것
- 사법개혁 의제 설정에서부터 공론화를 통한 시민참여가 가능할 것

2003/10/29 [논평] 사법개혁 세번째 시도, '사개위'가 성공하려면

- 실질적 개혁 위해 법적 제도적 장치 보완해야, 회의공개 등 국민참여 보장해야

2003/10/31 [논평] 국민기본권 제한을 최소화하라는 헌법정신 되살린 결정

- 금지구역 300미터로 확장하려는 집시법 개악안은 철회되어야

2003/11/3 [보도자료] '이익충돌에 의한 수임제한과 변호사 윤리' 토론회 개최

- 이익충돌의 유형분석과 그로 인한 수임제한 가능성 제기

2003/11/28 [논평] 국가인권위원회도 집시법 개정안 "반대"

- 국회는 반인권적 집시법 개정안 폐기해야



노조 손배소 · 가압류 이렇게 본다

김제완 _ 고려대학교 법과대학 교수/변호사

노조활동을 이유로 하여 회사가 노조 및 노조 간부 나아가 그들의 신원보증인 등에 대한 거액의 손해배상청구를 제기하고 가압류를 하는 것은 신중 노동운동 탄압방법으로 널리 활용되어 왔음은 주지의 사실이다.

사용자인 기업으로서는 노동조합의 파업에 절차상 하자가 있을 경우, 이를 불법행위로 규정하고 노조 및 그 간부들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은 법리적으로 문제 삼을 이유가 없다고 할 는지도 모른다. 그러나 뒤에서 살피는 바와 같은 문제점을 차치 하더라도 노조 및 노조원에 대한 손배소 · 가압류 관행에 심각한 문제점이 있다는 것은 우선 그 결과가 보여 준다. 최근까지 이어 지고 있는 노조 지도자들의 자살과 단체행동의 격화에 관하여 손 배소 · 가압류가 중요한 원인의 하나가 되었음은 널리 지적되고 있다. 손배소 · 가압류는 근본적으로 노사관계를 안정시키는 것 이 아니라 노사갈등을 증폭시키는 방책이라는 점은 누구도 부인 할 수는 없는 것이다.

이에 노무현 대통령은 정권 인수 초기단계부터 이와 같은 손배 소 · 가압류의 문제점을 해결할 것을 약속하기도 하였지만 아직 까지 뚜렷한 결과를 얻은 바 없으며, 다만 현재 노사정위원회를

중심으로 준비되고 있는 이른바 “노사관계법 · 제도 선진화 방 안”에서 손배소 · 가압류에 관한 부분적인 제한의 도입¹⁾을 포함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노조활동에 대한 손배소 · 가압류는 다음과 같은 이유로 제한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첫째, 노조활동은 원칙적으로 정당한 행위이지 불법행위가 아 니라는 인식이 필요하다는 점이다. 물론 문제가 되는 것은 파업 이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이다. 그러나 이러한 절차상의 하 자라는 것이 대부분 우리나라의 근로관계법이 근로자들의 권익 보다는 공익이나 산업평화 등을 우선시하면서 사실상 파업권을 제한하기 위한 목적에 도입된 것들이어서, 그와 같은 규정을 모 두 지키면서 효과적인 파업을 하기 어렵다는 점은 계속적으로 지 적되어 왔던 문제점이고, 손배소 · 가압류가 문제되는 대부분의 파업들은 이와 같은 상황에서 이루어진 것이다. 즉, 근로자의 권 리가 정상적으로 인정되는 합리적인 국가에서라면 결코 문제될 수 없는 사안이 우리나라의 경우 “불법행위”로 되는 것이다. 결국 우리나라에서 제기되는 대부분의 손배소 · 가압류는 보편적인 정 당성을 얻기는 어려운 청구들이라고 생각된다.

둘째, 손해배상의 주체가 누구인가 하는 점이다. 문제가 된 사안들은 거의 대부분 노조만을 상대로 한 것이 아니라 노조의 간부 및 주요 노조원, 나아가 이들의 신원보증인들에게까지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 결과 그 노조간부나 노조원들은 가족·친지들로부터 심한 압박을 받게 되고, 결국 몇몇 사안에서는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비극까지 초래하는 것이다. 사건으로는 설사 기업이 불법파업으로 인한 손해를 입었다 하더라도 이는 단체로서의 노조를 상대로 청구하여야 할 뿐 노조의 간부나 노조원들 개인에 대하여는 청구할 수 없는 것으로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한다. 노조의 간부는 노조라는 단체의 일을 행하는 것이어서, 노조에 대하여 책임을 부담하면 된다. 마치 회사의 간부나 직원이 회사의 방침에 따라 어떤 근로자를 “부당해고”하였을 경우, 회사에 대해 청구하지 아니하고 개인적인 복수심에서 회사의 간부나 담당직원 개개인을 상대로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청구를 하는 것은 그 법률적 정당성 여부를 떠나 사회상규상 선뜻 받아들이기 어려운 것처럼, 기업이 파업의 주체인 노조 뿐 아니라 그 간부 및 소속근로자 개개인들을 상대로 청구하는 것은 그야말로 비열하고 “딱 가는” 망책이라는 비난을 받을 만하다. 노조활동의 일환이라고 볼 수 없는 개인의 일탈행위가 아닌 한, 노조의 정상적 결의를 간부 및 노조원들이 이행한 것에 불과한 경우라면, 설사 파업과정상 절차상의 하자가 있는 경우에도 이에 대해 민사적인 손해배상의 책임을 져야 하는 것은 노조이지, 노조원은 아니라고 본다.

셋째, 과연 “손해”가 무엇인가 하는 점이다. 통상적으로 손해소·가압류에서는 소위 불법파업으로 인하여 입은 회사의 영업상 손실까지 포함하여 어마어마한 금액을 청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이러한 보도를 접하면서 개인적으로 늘 느끼는 의문은 “노조가 파업할 경우 저렇게 많은 손해를 입는다면, 왜 노조와 타협하지 않았을까?” 하는 점이다. 예컨대 “근로자들이 하루동안 일을 하지 않아 회사는 10억원이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잃었다” 라고 사용자가 주장하여 제소하였다고 하자. 그러나 이는 뒤집어 말하면, “근로자들은 평소 일을 하여 하루에 10억원

라는 어마어마한 이익을 회사에 남겨 주고 있다” 라는 말과 같은 것이 아닌가? 거액의 경제적 손실을 주장하는 회사가 노조와 타협하지 못하는 것은 참으로 이해하기 힘들다. 사건으로는 손해소·가압류에 있어서 인정될 수 있는 손해는 적극적인 손해²⁾에 한정되어야 하며, 이른바 경제적인 손해(economic loss)는 제외되어야 한다고 본다. 일반 민사 불법행위사건에 있어서도 경제적인 손해에 관하여는 대체로 손해의 범위에서 배제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세계적인 추세이기도 하다.

넷째, 마지막으로 손해소·가압류는 언제 왜 제기하는가를 생각해 보자. 쟁의과정중에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또는 쟁의 종료 후 제기하는 것이 바람직한가? 쟁의과정중 제기한다면 이는 쟁의에 휘발유를 붓는 격으로, 바람직한 선진적 노사관계의 정착을 위해서는 결코 좋은 방법이 될 수 없다. 그렇다면 쟁의가 끝난 후 제기하는 것으로 할 것인가? 쟁의가 끝난 후 제기하는 것은 대부분 단체협약에 대한 배신이 될 수밖에 없고, 이는 결국 새로운 분규의 불씨가 될 뿐이다. 결국 손해소·가압류라는 것은 평화로운 쟁의의 해결을 염두에 둔다면 완전히 무용한 제도이다. 일체의 타협 없이 노조를 분쇄하려는 의도가 있는 경우 또는 진정한 타협의사 없이 근로자들을 기망하여 일단 단체협약을 체결한 후 노조의 “뒤통수를 치는” 경우 이외에는 별다른 의미가 없는 수단이다.

손해소·가압류를 제한하는 것을 포함한, 노사관계의 선진화를 위한 특별한 행정조치 또는 입법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본다. 그러나 그와 같은 입법이 이루어지기 전에도 사법부에서는 이를 합리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 특히 가압류의 경우, 필수적으로 변론 또는 심문 절차를 열어 충분한 심리과정을 가진다면, 과도한 가압류로 인한 문제점을 상당부분 예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노사가 극단적인 대처국면으로 가기 전에 한번 더 타협할 수 있는 시간과 기회를 부여하는 의미가 있다고 생각된다. 법원의 지혜로운 재판 진행은 노사관계의 선진화에 적지 않은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이다.

1. 최저생계비를 초과하는 부분에 한하여 가압류가 가능한 것으로 제한하는 안으로 알려져 있다. 인권과 정의 327호(2003.11.) 특집 “노사관계 선진화방안에 대한 평가 및 과제” 좌담회 참조.

2. 예컨대 폭력행위로 인하여 입은 기계 장비 등의 파손으로 인한 수리비 손해 등



헌법상 권리로서의 확인된 ‘변호인입회권’

조 국 _ 사법감시센터 소장/서울대학교 법과대학 교수

I. 들어가는 말 ‘송두율 교수 사건’을 계기로 확인된 변호인입회권

지난 11월 11일 대법원 2부(주심 배기원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로 구속된 송두율 교수에 대한 신문시의 변호인입회 허용여부를 검토하면서, 재판부는 “아직 형사소송법에 명문규정을 두고 있지는 않지만 누구든지 체포 또는 구속을 당한 때는 즉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갖는다고 규정한 헌법 규정에 비추어 구금된 피의자는 형사소송법의 타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유추 적용해 피의자신문을 받을 때 변호인의 참여를 요구할 수 있다”면서 “또 수사기관은 이를 거절할 수 없는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인신구속의 적법절차를 규정한 헌법 정신에 부합한다”고 밝혔다.

현행 형사소송법은 피의자신문시 변호인입회권을 명문으로 보장하지 않고 있으며, 근래까지의 수사관행 역시 변호인입회를 거부해왔다. 그 결과 밀행주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피의자신문은 피의자를 고립무원상태에 빠지게 하여 심리적 자포자기에 빠지게 할 뿐만 아니라, 수사관에 의한 인권유린을 방치하는 위험을 항상 내포하고 있었다. ‘민주화’ 이후 학계와 인권단체는 변

호인입회권의 보장을 줄곧 제기하였고, 그 결과 최근 검찰과 경찰은 변호인입회를 부분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방침을 발표하고, 형사소송법도 역시 개정하겠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와중에 ‘송두율 교수 사건’이 발생하였고, 법원은 형사소송법 개정이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헌법적 형사소송”의 관점에서 변호인입회권을 헌법상의 권리로 인정한 것이다.

II.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의 핵심적 구성요소로서의 변호인입회권

형사피의자·피고인의 신체구속은 심리적 고립무원의 상태를 초래하고, 수사기관은 이를 이용하여 자백을 획득하려 노력하게 된다. 따라서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무죄추정이 되는 형사피의자·피고인이 자신의 인권보장과 방어준비를 하기 위하여 필수불가결한 핵심적 권리로서, 이 권리의 보장 없이 “무기평등의 원칙”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다. 변호인은 피의자가 수사기관과 “전투”를 벌이는데 있어 피의자를 위한 “창”과 “방패”로서 역할해야 하는 것이다. 바로 이러한 이유로 헌법과 형사소송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를 규정하고 있는 것이다. 그런데 변호인입회권은 이상과 같이 중요한 의미를 가진 변호인과의 접견 교통권을 보다 내실화하는 결정적 요소이다. 변호인입회권은 피의자·피고인의 인권을 보장할 뿐만 아니라, 조서의 성립진정, 피의자·피고인의 자백의 임의성 및 신빙성에 대한 논란을 원천 봉쇄한다는 면에서 인권존중과 수사효율의 양 측면 모두에서 필요한 권리가기도 하다.

III. 변호인입회권 보장의 범위와 예외 검찰과 경찰의 입장 비판

이번 결정으로 변호인입회권이 변호인접견교통권의 내용을 인정되었지만, 향후 입법화 과정에서 그 보장의 범위와 예외를 둘러싼 논쟁이 예상된다. 1999년 6월 경찰청이 발표한 경찰신문에서의 변호인입회 허용방침을 보면, (i) 국가보안법위반사건, (ii) 조직폭력, 마약, 테러사건, (iii) 공범 등의 증거인멸 또는 도주를 용이하게 하거나 관련사건의 수사 및 재판에 중대한 영향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되는 사건, (iv) 기타 수사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한다고 판단되는 사건 등의 경우에는 경찰관서의 장에 의해 제한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그리고 2002년 법무부가 제출한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내용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고 보인다. 동 개정안은 신문과정에서 변호인 입회를 허용하되, 체포·구속 후 48시간 이내에는 변호인의 입회를 제한하고, 또한 변호인이 입회 하더라도 피의자를 대신해 답변을 하거나 신문을 제지 또는 중단 시키는 등 변호인이 신문에 개입할 수 없다는 단서를 달고 있다.

그러나 변호인입회는 중한 범죄일수록 더욱 요구되는 것임에도 불구하고 일정한 범위의 중한 범죄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변호인입회를 제한하는 것은 타당하지 않고, 경찰의 지침처럼 “중대한 영향”이나 “중대한 지장”에 대한 판단기준도 불분명하다. 그리고 법무부의 형사소송법 개정안의 경우도 변호인입회가 가장 절실히 요구되는 시기는 인신구속이 된 초기라는 점, 헌법은 변호인의 조력을 받을 권리는 “즉시”(제12조 제4항) 보장될 것을 요구하고 있다는 점을 무시하고 있다. 또한 입회한 변호인이 수사관의 부당한 질문이나 신문방식에 대하여 이의를 제기하거나 묵비권 등 피의자의 권리에 대하여 조언을 할 수 없다면 변호인입회는 유명무실해질 것임을 유념해야 한다. 변호인이 피의자의 “장”과 “방패”가 되기 위하여 배석하는 것이지, 단지 수사기관의 피의자신문에 “병풍” 역할을 하기 위하여 배석하는 것은 아니다.

요컨대, 현재의 경찰과 검찰이 제시한 변호인입회제도 아래에서는 변호인입회권 자체는 인정되지만 그 효과를 반감되고 말 것이다. 변호인입회는 범죄의 중함에 따라 일률적으로 제한되거나 인신구속 후 일정 시간 동안 무조건 금지되어서는 안 되고, 변호인입회가 이루어질 경우 형사정도가 중대하게 훼손될 수 있는 경우에 한하여 예외적으로 제한되어야 할 것이다. 예컨대, 변호인입회를 허용할 경우 증거가 인멸되거나 공범이 도주하거나 또는 제3자 타인에게 육체적 위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믿을만한 상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 또는 피의자신문에 참석한 변호인의 의도적 신문방해가 있는 경우 등이다.

IV. 맺음말 신속한 형사소송법 개정의 필요성

‘송두율 교수 사건’을 계기로 한 대법원 판결은 향후 한국 형사절차의 틀을 바꾸어 놓을 것이다. 형사소송법상의 명문규정이 없음에도 헌법을 동원하여 변호인입회권을 인정한 법원의 준(準) 입법적 판결에 경의를 표하고 싶다. 이제 공은 법무부로 넘어 갔다. 법무부는 기존의 안을 고집하지 말고 이번 대법원 판결의 정신을 살려 빠른 시간 내에 형사소송법 개정안을 만들어 국회에 제출해야 한다.

그리고 변호인입회권이 법률로 인정되더라도 현행 국선변호인제도는 피고인 외에는 구속적부심사 청구를 한 피의자에 대해서만 인정되므로, 변호인입회권은 변호인 선임할 자력이 있는 피의자를 위한 제도로만 작용할 우려를 갖고 있다. 따라서 무자력 피의자를 위한 각종의 형사법률구조제도를 시급히 창설할 필요가 있다.

“행동하는 시민이 아름답다”

이 나라의 주인 된 도리를 다하려는 시민들,
당신이 있기에 세상은 훨씬 맑고 투명합니다.
시민의 힘이 세상을 바꾸듯이, 좋은 변화를 위해,
모두 함께 어깨를 걸고 나아갑시다.
당신 결연, 늘 참여연대가 함께 할 것입니다.

참여연대 회원가입은,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에서 바로 가입
(02)723-4251로 문의 후 가입할 수 있습니다.

사법감시센터로 지정가입을 하시면, 사법감시지를 비롯한
사법개혁에 관한 전반적 소식을 더욱 잘 접할 수 있습니다.



국민투표와 헌법

임지봉 _ 건국대 법대 교수(헌법학)

대통령 측근비리 수사에 대한 보도 직후 정권 재신임여부를 묻는 국민투표를 실시하겠다는 대통령의 갑작스런 선언이 전국을 뒤흔들더니, 아직까지 그 여진이 계속되며 정국은 표류하고 있다. 국민투표와 관련한 정국표류에 일조를 하고 있는 것이 바로 국민투표에 대한 위헌논쟁이 아닐까 생각한다. 단언컨대, 재신임 여부만을 묻는 국민투표는 명백히 위헌이다. 이러한 국민투표를 플레비시트(Plebiscite)라 부르는데, 우리 헌법은 플레비시트를 인정하는 어떠한 규정도 두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특히, 플레비시트는 과거 많은 독재자들이 정권의 공고하나 연장을 위해 악용한 사례가 많아, 헌법학자들은 입을 모아 플레비시트의 해악과 위헌성을 지적한다. 플레비시트와 대칭되는 국민투표의 개념으로 레퍼런덤(Referendum)이 있다. 이것은 헌법이 일정한 사항에 대해 직접 주권자인 국민의 뜻을 물어 국민투표로 결정할 것을 명하고 있는 합헌적 국민투표 유형이다. 우리 헌법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대한 국민투표(헌법 제72조)와 헌법개정안을 확정하기 위한 국민투표(헌법 제130조)의 두 가지 레퍼런덤을 인정하고 있다.

결론부터 이야기해서, 만약 이번의 국민투표가 순수하게 정권의 재신임 여부만을 묻는 것이 아니라, 현 정부를 대표할 수 있는 정책과 연계시켜 신임투표(플레비시트)적 성격을 여기에 가미하는 형태로 이루어진다면 헌법 제72조의 레퍼런덤에 해당되어 합헌적 국민투표가 될 수 있다고 필자는 믿는다. 제72조는 “대통령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외교·국방·통일 기타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을 국민투표에 붙일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이 때 “외교·국방·통일”은 그 뒤에 따라 나오는 “기타”라는 말로 인해 단지 예시적인 것에 불과하게 되었고, 초점은 “국가안위

에 관한 중요정책”에 모아진다. 그런데, “국가안위”에서 “안위”는 그 사전적 의미가 “안전함과 위태함”이라는 데에서 알 수 있듯이, 외부로부터의 군사·비군사적 위협이나 침략에 대해 이를 억지 또는 배제하여 국가의 안전을 보장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안보”와는 다른, 보다 포괄적인 개념이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동조항이 “대통령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라는 규정을 두고 있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에 해당하는가의 여부는 대통령의 재량에 맡겨져 있다고 보는 것이 헌법학계의 정설이다. 따라서, 이번의 국민투표가 국가의 경제적 혹은 정치적 “위태함”을 타계하려는 중요정책과 연계될 경우, 또 대통령이 그러한 정책이 “국가안위에 관한 중요정책”이라고 재량적으로 판단하여 국민투표에 붙일 경우, 헌법 제72조가 규정하는 국민투표에 해당할 수 있음은 다언을 요하지 않는다. 물론, 그 “정책”은 반드시 현 정부 자체를 대표할 수 있어 ‘그 정책=현 정부’의 등식이 성립될 수 있는 것이어야 한다. 현 정부의 성격을 오롯이 드러낼 수 없는 정책과 연계될 경우, 투표결과가 왜곡될 수 있는 것이다. 현 정부는 신임하지 않지만, 국민투표안(國民投票案)으로 정부가 내건 정책에는 찬성하므로 찬성표를 던지는 국민들의 표도 현 정부에 대한 신임의 표로 분류되게 되기 때문이다. 정책에 신임을 연계시키는 것 자체도 문제점이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언론을 통한 친정부적 여론선동으로 민의가 왜곡될 수도 있고, 특히 많은 나라들에서 정책과 신임이 결부된 국민투표가 대부분 국민의 지지를 받았다는 역사적 사실이 엄존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것은 우리 언론의 대정부 비판기능이 활성화되어 있다든가, 우리 국민의 전반적 정치의식이 이미 많이 높아져 있다는 사실을 고려하면 달리 생각해볼 수도 있는 문제가 아닐까?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박근용 _ 참여연대 경제개혁팀장

지난 11월 20일 서울고법 민사21부는 참여연대가 소액주주 22명을 원고로 하여 제기했던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항소심을 판결하였다. 1심 판결(수원지법 민사7부)에 비해 피고로 지목된 삼성전자의 전·현직 이사들의 손해배상책임액은 977억원에서 190억원으로 상당히 줄어들었으며 1심에서는 배상책임이 있다고 인정된 행위에 대해 2심 재판부는 책임이 전혀 없다고 판결하였다. 하지만 이런 문제를 제외하고 보면 이사회의 정상적인 운영 및 기업지배구조 개선 측면에서 이번 판결의 의미는 작지 않다.

우선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이견회 삼성그룹 회장이 부정한 회계처리방식을 통해 삼성전자의 자금 75억원을 비자금으로 조성하고 노태우 전 대통령에게 뇌물로 제공하여 형사처벌받았던 사건과 관련하여, 소멸시효가 지난 5억원을 제외한 70억원을 회사에 반환, 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그리고 삼성전자 이사회가 삼성종합화학 주식(비상장)을 취득한 지 얼마 지나지 않아 상속증여세법에 따른 보충적 평가로 계산하여, 취득가와 비교함은 물론이거니와 여타 주식가치평가 방법과도 비교했을 때에도 부당하게 낮은 가격으로 매각했던 것에 대해, 2심 재판부도 1심 결과와 동일하게 최소한 주당순자산가치와 비교하였을 때 626억원의 손실을 입었다고 판결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1심과는 달리, 손해배상 책임이 있는 5명의 피고들이 회사의 이익창출에 기여한 공로가 있으며 당시 주식매각의 필요성이 있었다는 점을 고려하여 손실액의 20%에 대해서만 배상책임이 있다고 보아 120억원만 연대배상할 것을 선고하였다.

한편 1심 판결과 달리 손해배상책임이 전혀 없다고 보아 2심 재판부가 원심판결을 파기한 부분이 있었다. 이는 이천전기에 대한 투자에 대한 부분으로, 원고측인 참여연대는 삼성전자 이사회

가 경영판단이라고 볼만한 최소한의 합리적인 투자검토를 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사회의 투자결정 행위는 “경영판단 존중의 법칙”에 따라 보호받을 수 있는 행위가 아니고 따라서 그 손실액을 배상하라고 요청했으며, 1심 재판부도 이러한 원고측의 주장을 인정하여 276억원의 배상책임을 선고했다. 그러나 판결문이 아직 공개되지 않아 정확한 이유를 알 수는 없으나 2심 재판부는 이사회의 행위는 보호받아야 할 경영판단이라고 보아 손해배상책임을 면제하였다.

또한 1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아 원고측이 항소했던 계열사 부당지원 관련 이사들의 책임은 2심 재판부도 인정하지 않았다. 원고측은 공정거래위원회가 부당지원행위로 판결하여 과징금을 부과했던 사건에 대해 이사들의 책임이 있다고 주장했으나, 1심에 이어 2심 재판부도 부당지원과 관련한 의사결정에 이사들이 직접 참여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책임을 물을 수 없다고 한 것이다.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은 98년 12월에 수원지법에 제기되었다. 그후 만 3년이 지난 2001년 12월에 1심 판결이 나왔으며, 다시 그로부터 만 2년이 가까워진 2003년 11월에 2심 판결이 나왔다. 원고측인 참여연대는 불법자금 제공과 관련한 책임인정은 현재 진행되고 있는 검찰의 비자금 수사와 관련하여 의미가 있다고 보는 동시에, 삼성종합화학 주식매각과 관련하여 손해배상책임을 20%로만 인정한 것은 재판부가 납득할 수 없는 재량권을 행사한 것으로 받아들이기 어려우며, 경영판단으로 인정한 이천전기 투자자에 대해서도 판결문을 직접 보아야하겠지만 수긍하기 어렵다는 입장이다.

경제사범 재판결과 리스트

정리 _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998년

10/21

기아부도 사태와 관련,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전(前)기아그룹 회장 김선홍(金善弘) 피고인에 대한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7년을 선고. 전(前)기아그룹 종합조정실 사장 이기호(李起鎬) 피고인에 대해서는 징역 3년6월을, 허위 재무제표를 작성해 거액을 대출받은 혐의(특경가법상 사기)로 기소된 기아자동차 전(前) 부회장 한승준 피고인은 징역 3년, 전(前)사장 박제혁 피고인과 김영귀 피고인에 대해서는 각각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孫智烈 부장판사)

11/23

청구비리 사건과 관련해 회사자금 1천4백억원을 유용한 혐의 등으로 구속 기소된 청구그룹 전(前) 회장 장수홍(張壽弘 55) 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위반(배임 횡령 사기 등)죄를 적용, 징역 6년6월을 선고

재판부 : 대구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이국환 李國煥 부장판사)

11/26

한국부동산신탁으로부터 수백억원대를 불법대출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주)경성 이재학(李載學 38) 사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과 추징금 1천5백만원을 선고, 규정을 무시하고 경성에 자금을 특혜지원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한국부동산신탁 이재국(李在國 54) 전(前) 사장과 여영종 전(前) 부장(42)에게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5년과 4년을 각각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최세모 崔世模 부장판사)

12/4

업무정지되기 하루 전에 장은증권 직원 4백17명에게 명예퇴직금 등 2백6억원을 무단지급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가 보석으로 풀려난 뒤 징역 5년이 구형된 전(前) 장은증권 사장 이대림(李大林)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하고 노조위원장 박강우(朴康雨)피고인에게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이호원 李鎬元 부장판사)

1999년

1/5

건설업자로부터 1억원이 입금된 '뇌물통장'을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4년이 구형된 전 고속도로관리공단 사장 신옥수 피고인(55)에 대해 배임수재죄를 적용, 징역 2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1단독 김창석 판사

1/7

(주)항도중금을 적대적으로 인수합병하기 위해 편법으로 수백억원을 조성해 주식을 사들인 혐의로 구속 기소돼 징역 7년이 구형된 한효건설 부사장 김종명(金重明 38)피고인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재판장 손지열 孫智烈 부장판사)

2/26

기아부도사태와 관련, 기아특수강 등 변제 능력이 없는 계열사에 불법적인 지급보증을 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전(前) 기아그룹 회장 김선홍(金善弘)피고인에 대한 항소심 선고공판에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4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1부(재판장 김연태 金然泰 부장판사)

7/6

대학 부속병원장이 의뢰기기 납품업체들한테서 받은 거액의 리베이트 가운데 1억6천만원을 상납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6월을 선고받은 김기삼(61) 전(前) 조선대 총장에게 배임수재죄를 적용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3년과 추징금 1억6천만원을 선고, 2억원의 리베이트를 받은 혐의로 구속기소된 최봉남(51) 전(前) 조선대 병원장에게는 징역 1년6월과 추징금 2억원을 선고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5부

7/9

담보확인 없이 54억원을 부당대출토록 압력을 행사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5년이 구형된 원철희(元喆喜) 전(前)농협중앙회장에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이호원 李鎬元 부장판사)

7/27

미화 1억6천여만달러(약 1천9백여억원)를 해외로 빼돌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12년이 구형된 신동아그룹 회장 최순영(崔淳永, 61)씨 피고인에게 특정범죄상 재산국외도피죄 및 업무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5년의 실행 및 추징금 1천9백64억여원을 선고, 공범으로 기소돼 징역 6년이 구형된 전(前) 주신아원 대표 김종은(金鍾殷, 46)씨 피고인에게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30부(이근웅 李根雄 부장판사)

12/14

세금포탈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6년에 벌금 51억원이 구형된 홍석현(洪錫玄) 중앙일보 회장에게 특정범죄가중처벌법(조세포탈) 및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배임) 위반죄를 적용,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 및 벌금 38억원을 선고, 함께 기소돼 징역 3년이 구형된 보광그룹 이화우 상무에게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 및 추징금 6천7백만원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김이수 金二洙 부장판사)

법정상 배임죄를 적용, 징역 2년6월을 선고, 김 전(前) 대표는 1997년 6월부터 극동그룹 계열사인 동서증권의 투자금을 이용, 증권사에서 기업어음(CP)을 할인하는 수법 등으로 자금을 조성, 극동건설 등 계열사에 1천4백42억원을 지원한 혐의로 99년 5월 기소됐음.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大勳 부장판사)

9/6

차명계좌를 통해 대주주에게 2400여억원을 불법대출한 혐의로 구속기소돼 징역 10년이 구형된 동아금고 사장 김동열(61)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해 징역 6년을 선고, 영업부장 한기선(45)씨와 전(前) 감사 진정원(48)씨에게 각각 징역 3년에 벌금 500만원, 징역 2년6월의 실행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容현 부장판사)

11/13

그룹 연수원 매각대금 수신회원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 기소된 해태그룹 박건배(朴健培) 전(前)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 위반죄(배임 횡령) 등을 적용,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 및 추징금 1억원을 선고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6부(양동관 梁東冠 부장판사)

11/29

열린금고 불법 대출과 리젠트증권 주가 조작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증권거래법 위반) 등으로 구속기소돼 징역 7년을 구형 받은 엠시아이코리아 부회장 진승현(28) 씨에게 징역 7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재판장 金容현 부장판사)

12/9

상환능력이 의심되는 기업들에 수백억원대의 부당대출을 해 주고 워크아웃 직전의 대우 계열사 주식을 대량 매집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삼신올스테이트생명보험 전(前) 대표 김경엽(62)씨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를 적용해 징역 3년을 선고, 김씨는 1997~99년 신용이 불량한 대우 계열사 등에 270여억원을 대출하고 대우증권 경영권분쟁 때 그룹쪽의 요청을 받고 지분을 매입해 주가하락으로 회사에 70여억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기소됐음.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재판장 朴容규 부장판사)

2000년

3/14

1400여억원의 회사자금을 횡령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前) 청구그룹회장 장수홍(張壽弘, 58) 피고인 상고심에서 징역 5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 장피고인은 청구그룹을 경영하면서 총 1472억원의 회사자금을 유용한 혐의와 대구방송 설립인가를 얻기 위해 홍인길(洪仁吉) 전(前) 대통령 총무수석에게 45억원을 건넨 혐의 등으로 98년 6월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6년 6월, 2심에서 징역 5년이 선고된 바 있음.

재판부 : 대법원 형사1부(주심 申性澤 대법관)

11/17

그룹 연수원 매각과정에서 거액을 빼돌린 혐의로 구속기소된 해태그룹 박건배 전(前) 회장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수재죄 등을 적용해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 및 벌금 3억원, 추징금 1억원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

2001년

2/11

자금사정이 좋지 않은 계열사에 1천4백42억원을 불법지원한 혐의로 기소된 극동건설 김천만 전(前) 대표(59)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

2002년

3/26

출자자 불법대출과 주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7년이 선고된 MCI 코리아 실소유주 진승현(陳承鉉)씨에 대해 징역 5년을 선고, 재판부는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된 공소사실 가운데 두 가지

배임혐의에 대해서는 "서류상으로만 대출이 이뤄졌을 뿐 실질적으로 회사에 손실을 끼쳤다고 볼 수 없다"며 무죄를 선고. 재판부는 나머지 공소사실에 대해서는 모두 1심과 같이 유죄로 판단하고 일부 무죄 부분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췄다고 밝힘. 진씨는 자신이 대주주인 열린금고 등에서 모두 2000억원대의 불법대출을 받고 리젠트그룹 제임스 멜론 전 회장 등과 공모해 1만4000원대이던 리젠트증권 주가를 3만3000원대로 끌어올린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음.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합의3부(손용근 孫容根 부장판사)

5/9

한보그룹 계열사에 200억원대 자금을 불법지원해준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정태수(鄭泰守) 전(前) 한보그룹 회장의 장남 종근(宗根 48 상아관광 회장)씨에 대해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 등을 적용, 징역 3년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김용현 金庸憲 부장판사)

9/17

860억원대의 횡령 및 추가조작 등 혐의로 구속기소된 지앤지(G&G) 그룹 회장 이용호(李容湖)씨에 대해 징역 10년 및 벌금 500만원을 선고, 이씨와 공모해 회사에 손해를 입힌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前) 대양상호신용금고 대주주 김영준(金榮俊)씨와 전(前) 레이디가구 이사 정상교씨에게 각각 징역 7년을, KEP전자와 삼에인더스 등 법인에는 각각 벌금 5억원과 3억원을 선고, 이씨는 860억원의 횡령 및 277억원 상당의 배임 행위로 회사에 손해를 입히고 보물선 인양 등에 대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주가를 조작한 혐의로 차정일(車正一) 특별감사팀에 의해 지난해 8월 구속기소됐음.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박용규 朴龍奎 부장판사)

2003년

5/27

금융기관을 인수해 계열사에 편법으로 자금을 지원한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 등으로 기소된 나승렬(羅承烈) 전(前) 거평그룹 회장에게 징역 2년6월을 선고. 그러나 재판부는 나 전 회장의 건강상태가 악화된 점을 감안해 법정구속은 하지 않았음.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李大敬 부장판사)

6/13

SK그룹 부당내부거래 및 분식회계 등을 주도한 혐의로 기소된 최태원(崔泰源) SK(株) 회장에게 징역 3년의 실형을 선고,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손길승(孫吉丞) SK그룹 회장 겸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과 김승정(金昇政) SK글로벌 부회장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김창근(金昌根) SK(株) 사장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하는 등 나머지 임원 7명에게도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SK글로벌 법인에 대해서는 벌금 3000만원을 선고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2부(김상균 金尙均 부장판사)

8/27

배임 및 분식회계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최원석(崔元碩) 전(前) 동아그룹 회장에게 배임죄로 징역 2년6월에 집행유예 4년, 분식회계를 한 죄로 징역 1년에 집행유예 4년을 각각 선고, 최 전(前) 회장은 1988~97년 동아그룹 계열사 등을 통해 9200억원의 분식회계를 지시한 혐의로 2001년 3월 불구속 기소됐음.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1부(황찬현 黃贊鉉 부장판사)

9/22

계열사끼리 주식 맞교환으로 900억원대의 부당이득을 챙기고 1조5천억원대의 분식회계를 한 혐의(특정경제범죄법상 배임죄) 등으로 구속기소된 최태원(崔泰源) SK(株) 회장에게 법원의 보석결정

재판부 : 서울고법 형사합의 6부(재판장 박해성 부장판사)

11/13

외화를 몰래 유출하고 회사자금을 이사회 결의 없이 학교법인 등에 제공한 혐의로 불구속기소된 최순영 전(前) 신동아그룹 회장에 대해 법정구속 없이 징역 5년에 추징금 1175억원을 선고, 최씨는 지난 97년 8월 면세지역인 영국령 케이만 군도에 가공의 역외펀드를 설립, 미화 1억달러를 유출한 뒤 이중 8000만달러를 국내로 들여오지 않고 유용한 혐의와 대한생명의 회사자금 172억원을 신동아학원과 자신의 부인이 이사장인 K재단에 기부한 혐의 등으로 작년 7월 불구속 기소됐음.

재판부 : 서울지법 형사합의23부

사법감시 justice watch vol.20

등록 2003년 1월 6일 발행 2003년 12월 1일 통권 제20호 등록번호 문화바02968 발행인 박상중 편집인 조국 편집위원 김두식(한동대/변호사) 김제완(고려대/변호사) 김창록(부산대) 박경신(미국변호사) 정지석(변호사) 조국(서울대) 이국문(한동대) 임지봉(건국대) 하태훈(고려대) 차병직(변호사) 한상희(건국대) 한상훈(국민대) 한인섭(서울대)

참여연대 사법감시센터

110-240 서울시 종로구 안국동 175-3 안국빌딩 신관3층 ● 전화 02-725-7104 팩스 02-723-5055 ● 이메일 jwc@pspd.org 인터넷 웹사이트 http://peoplepower21.org/